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3050
- 발 의 자 : 이세열 의원(찬성의원 20명)
- 발 의 일 : 2022년 1월 21일
- 회 부 일 : 2022년 1월 25일

2. 제안이유

- 「지방세징수법」 상 ‘결손처분’이 ‘정리보류’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용어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체계에 맞도록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방세징수법」 상 용어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체계 정비
(안 제2조제2항제1호 개정, 제3조제9호 신설, 안 제4조 삭제)
- 나. 조례 조문체계 정비에 따른 근거조문 개정(안 제5조제3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 다. 입법예고(2022. 1. 27. ~ 2. 8.)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가. 개정의 취지 및 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결손처분” 용어를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시효완성 정리”와 “정리보류”로 나누어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지방세 결손처분 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지방세징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개정사항 정리 >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사유 발생시 “결손처분” 가능 i) 체납처분 종결후 배분액이 체납액에 부족한 때 ii) 체납처분 중지 iii)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iv)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input type="checkbox"/>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시에만 결손으로 처리 하도록 하고 내부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하도록 구분 iii) “시효완성 정리” i), ii), iv) “정리보류”

- 한편, 지방세 관계 법령상 종전의 “결손처분”의 의미는 지방세 납세의무의 소멸이 아니라 지방세 징수절차를 중지·유보하는 내부적 사무관리에 불과한 것*임에도,

* 과거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 舊 「지방세법」*에서는 징수가망이 없는 조세 채권채무를 조기에 종결시키는 납부의무 소멸사유의 하나로 결손처분을 규정하였으나

* 舊 「지방세법」

제30조의2 (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납입·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그 후 지방세법 개정으로 1997년 10월 1일부터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제외되어 1997년 개정 이후의 결손처분은 지방세 납세의무 소멸이 아니라 지방세 징수절차를 중지·유보하는 내부적 사무관리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체납자는 결손처분을 체납 지방세 부담에 대한 면책적 의미의 처분으로 인식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속행할 경우 민원이 지속 발생 해오고 있는바,
- 금번 「지방세징수법」 개정(2022.1.28. 시행)을 통하여 “결손처분”을 종전의 ‘결손처분’ 사유를 구분하여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효완성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한 것임.

※ 종전 “결손처분”=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 체납 지방세 징수절차의 잠정 중지·유보

< 지방세징수법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794호, 2022. 1. 28., 일부개정]

종 전	개 정
제10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2. (생략)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생략) <신설>	제106조(정리보류 등) ① ----- ----- ----- 정리보류를 -----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4.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 정리를 하여야 한다. ③ ----- 정리

종 전	개 정
<p>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u>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u>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보류를 ----- ----- <u>체납처분</u>- ----- . <단서 삭제></p>

< (참고) “정리보류”의 법규상 정의 사례 >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체납처분”이란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리보류”란 체납자의 소재 파악 곤란이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 집행이 무익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납처분 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5. (이하 생략)

-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체납 지방세에 대하여 사실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세의무가 없어질 때까지 그 징수절차를 보류한다는 의미로 사용해온 현행 ‘결손처분’ 용어를 ‘정리보류’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납세의무 소멸의 경우에는 “시효완성정리” 처분

-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과 여건에 따라 잠정적으로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결손처분을 함께 규정해온 지방세 관련 법령상의 규정과,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의미의 사전적 정의와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중의적 해석으로 인한 논란을 제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결손처분(缺損處分)의 사전적 정의: 일정한 사유로 부과한 조세를 거두어들일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그 납세 의무를 없애는 행정 처분(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국세의 경우는 1997년 1월 1일부터 결손처분의 납부의무 소멸효과를 폐지하였고, 2011년 국세징수법 개정{(시행 2013. 1. 1.) [법률 제11125호, 2011. 12. 31., 일부개정]}으로 결손처분을 법에서 삭제하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훈령)**에 “정리보류” 규정을 신설하였음.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1조(정리보류) 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1. 강제징수가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 받게 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

나. 결손처분 용어 변경사항 반영(안 제2조제2항제1호, 안 제3조제9호 신설, 현행 제4조 삭제)

○ 안 제2조제2항제1호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특별한 공적 중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을 통하여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문 중 ‘결손처분’을, 「지방세징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리보류’로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임.

< 본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① (생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p>1. 서울특별시 세입금(서울특별시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체납액을 납부 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p> <p>2. (생략)</p> <p>③ ~ ④ (생략)</p>	<p>1. ----- ----- ----- -----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 ----- ----- -----</p> <p>2. (현행과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	--

- 여기서 ‘체납 또는 결손처분(개정 “정리보류”) 자료 제공’이란 「지방세징수법」(제9조)에 따라 해당 자료(공공기록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제공함으로써, 체납자의 금융 관련 활동을 제한하는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는 체납처분 수단을 의미하는 것임.

○ 다음으로, 안 제3조제9호 신설 및 현행 제4조 삭제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 조례 제3조에서 체납액 징수 사례별로 열거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4조에서 결손처분(개정 “정리보류”)된 체납액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 최근 3년간 체납 지방세 징수 및 포상금 집행 실적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징수액	포상금	징수액	포상금	징수액	포상금	
계	226,319	2,049	184,629	1,711	227,365	1,916	
시	소계	47,264	487	35,787	455	52,879	626
	일반직	42,628	281	31,029	247	44,230	264
	*시간선택제	4,636	206	4,758	208	8,649	362
자치구	179,055	1,562	148,842	1,256	174,486	1,290	

* 안 제3조9호의 정리보류(결손처분)된 고액체납액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

- 조례의 규율 대상을 성격에 맞게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현행 제4조를 삭제하고 이를 안 제3조제9호를 신설(이동)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본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p>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p> <p>1. ~ 8. (생략)</p> <p><신설></p>	<p>제3조(지급기준)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른 고액체납액 중 정리보류(기존 결손처분 포함)된 고액체납액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제2조제1항제3호의 지급대상이 되는 징수액의 1,000분의 43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p>
<p>제4조(결손처분된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액체납액 중 결손처분(부분결손 제외)된 고액체납액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제2조의 지급대상이 되는 징수액의 1,000분의 43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p>	<p><삭제></p>

- 다만, 현행 조문 중 “부분결손 제외”라는 단서를 삭제하려는 것은 결손처분된 고액체납액의 징수를 전담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게 사실상 전액 결손처분된 체납액만을 배정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 재무국에서는 결손처분된 고액체납액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 과장 전결 내부결재 문서에 의해 전액결손된 체납자료를 배정하고 있음.

- 체납처분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된 체납액의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한도는 이 외의 체납액 징수에 비해 높은 수준 (징수액의 1000분의 43, 3천만원 한도)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그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성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3조제9호를 신설하면서 “결손처분(부분결손 제외)”을 “정리보류(기존 결손처분 포함)”로 변경한 취지는,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 이후 기존의 결손처분된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확인 규정한 것임.

다. 조문체계 정비에 따른 근거 조문 개정(안 제5조제3항)

- 안 제5조제3항은 종전 결손처분된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3천만원 이하)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으로, 그 지급기준으로 인용하고 있는 조문(현행 제4조)이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 삭제·이동 신설(안 제3조제9호)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본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8. (생략) <신 설>	제3조(지급기준) ----- -----. 1. ~ 8. (현행과 같음) 9.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액체납액 중 정리보류(기존 결손처분 포함)된 고액체납액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제2조제1항제3호의 지급대상이 되는 징수액의 1,000분의 43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결손처분된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액체납액	<삭 제>

중 결손처분(부분결손 제외)된 고액채
납액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제2조의 지급대상이 되는 징수액의 1,0
00분의 43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지급한도) ①·② (생략)

③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은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④ (생략)

제5조(지급한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3조제9호-----
-----.

④ (현행과 같음)

라. 기타(부칙)

-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 개정의 원인이 되는 개정 「지방세징수법」의 시행(2022. 1.28.)에 맞추어 본 조례의 시행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여 신속하게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개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위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최 석 훈
------	-------	-------	-------

참 고 1

지방세 “결손처분” 관련 근거 법 변천사항

<p>지방세법 (2010.3.31. 전부개정, 2011.1.1. 시행)되기 전의 것)</p>	<p>지방세기본법 (2010.3.31. 제정, 2011.1.1.시행)</p>	<p>지방세징수법 (2016.12.27. 제정, 2017.3.28. 시행)부터 금번 개정 전까지</p>
<p>제30조의3 (결손처분)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p> <p>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p> <p>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p> <p>3. 제30조의2제3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p> <p>* 3.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p> <p>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p>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9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p> <p>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p> <p>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p> <p>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p> <p>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0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p> <p>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p> <p>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p> <p>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p> <p>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참 고 2

“결손처분” (개정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 현황

(단위: 억원)

구분	합 계	시효결손 (개정 “시효완성정리”)	불납결손 (개정 “정리보류”)				
			소계	무재산	행방불명	배분(평가)액 부족	기 타
2017년	2,580	417	2,163	1,007	25	28	1,103
2018년	3,838	264	3,574	1,347	32	2,072	123
2019년	3,142	246	2,896	1,572	11	1,149	164
2020년	2,453	205	2,248	1,184	8	1,003	53
2021년	504	172	332	226	6	65	35